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04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일

발 의 자 : 임 회 도 의원

1. 제안이유

가.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뿐만 아니라 원안의결된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려 할 때,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게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함(안 제71조제4항)

3. 개정규칙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4항 중 “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”을 “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는”으로, “협의하여야 한다”를 “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1조(예산안 심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71조(예산안 심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는</u> ----- ----- <u>사전에 협의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